#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29

발의연월일: 2022. 9. 13.

발 의 자:이철규·배현진·강기윤

박정하・박덕흠・이인선

태영호 · 김학용 · 김상훈

박대수 · 구자근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개별가맹점으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 등 부정유통행위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식에서 전자식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류식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면 전환되더라도 유통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및 효율적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전수 실태조사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고 또는 제보에 의한 조사 방식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유통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8 신설).

#### 법률 제 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8(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 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8(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
	체의 장, 제26조의3에 따라 지
	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 • 단체의 장에게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_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